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5280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9,815,3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1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10,6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2021. 4. 21.경 주식회사 F로부터 E에 대한 2017. 11. 15.자 장기카드론대출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21. 10. 17. 기준으로 원금 16,323,321원, 지연손해금 8,341,673원 등 합계 24,664,994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E의 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7. 5.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상속지분 3/13), 망인의 자녀들인 H, E, I, J, K(상속지분 각 2/13)은 2017. 11. 1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2/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E에 대한 양수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과 2021. 1. 1.경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9,38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이 각 4,500만 원, 1,500만 원, 각 근저당권자가 L조합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잔존 피담보채무액은 3,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각 근저당은 2019. 5. 14.자 채무인수에 따라 채무자가 피고로 각 변경된 사실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인 9,380만 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E의 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9,815,384원 $[(9,380\text{만 원} - 3,000\text{만 원}) \times 2/13]$,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9,815,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9,815,3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1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304㎡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시멘트블럭조 스트레치붕 단층주택

52㎡

토담조 스트레치붕 단층창고

27㎡

- 이 상 -

